

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2634 호 |
|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“한국인권도시협의회”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명: 한국인권도시협의회
- 나. 설립배경: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
- 다. 참가현황: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(2021. 8월 현재)
- 라. 규약의 주요내용
 - 1) 협의회 명칭과 목적, 기능(제1조~3조)
 - 2) 구성 및 임원 등(제4조~7조)
 - 3) 회의 운영(제8조~11조)
 - 4) 실무협의회, 자문위원, 분과위원회 설치(제12조~14조)
 - 5) 경비부담, 회계보고 및 결산 등 기타사항(제15조~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제154조
- 나. 예산조치: 분담금 1백만 원 (2022년 편성 예정)

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

2017. 12. 7. 제정

2020. 2. 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설치하는 행정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명칭)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다.

1.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
2.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, 분석 및 연구
3.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
4.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
5. 교육,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인권업무 역량강화
6. 인권기관 및 단체 등 인권시민사회와의 협력 사업
7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5조(의무)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.

제6조(임원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, 부회장,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.

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.
2.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감사를 둘 수 있다.
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 대행자는 호선한다.

④ 회장은 공문발송 및 회계업무 등 협의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모든 재원 및 경비집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보충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. (개정 2020. 2. 3.)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표결권을 갖는다.

제8조의 1(회의방법) 협의회 회의는 참석회의, 서면회의, 화상회의 등 방법으로 개최한다. (개정 2020. 2. 3.)

제9조(의안제출)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 지방자치단체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회장 소속 인권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3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륜과 학식을 갖춘 외부 인권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,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,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 설치)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분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부담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제16조(수당 등)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회장은 매년 첫 번째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8조(규약의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(보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제20조(가입과 탈퇴)

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

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

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,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.
(개정 2020. 2. 3.)

부 칙

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 총 22개 지방자치단체 (제4조 관련)

(2021. 8월 1일 기준)

| 지 역 | 지 자 체 명 |
|-----|---|
| 서울 |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|
| 인천 | 미추홀구 |
| 광주 |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|
| 충남 | 아산시 |
| 경기 |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|
| 전북 |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|

관계법령

| | |
|------|---|
| 관계법령 | <p>「지방자치법」</p> <p>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/p> <p>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협의회의 명칭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|
|------|---|